

	보 도 자 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과 장 허승원 (044-205-3321) 사무관 김동혁 (044-205-3335)
 관계부처 합동	2021년 10월 14일(목) 16:45 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 과 장 박지훈 (044-215-4570) 사무관 최 연 (044-215-4571)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 과 장 이지현 (044-203-6429) 사무관 오명준 (044-203-6926)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과 장 서기웅 (044-203-4410) 서기관 김덕기 (044-203-4403)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과 장 이재평 (044-201-3646) 사무관 김영지 (044-201-4950)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광역정책과 과 장 박현성 (02-2100-1178) 사무관 박찬엽 (02-2100-1103) 자치분권위원회 메가시티지원TF 팀 장 문지영 (02-2100-2272) 사무관 주상철 (02-2100-2224)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

- 정부는 10.14.(목)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개최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다.

* 초광역협력 :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

-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난 4월 27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구성·운영 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 국가균형발전위원장·자치분권위원장(공동 단장) 및 기재부·교육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 차관 등으로 구성

-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3가지 방향에 따라 세부과제가 마련되었다.

□ 우선,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고,

-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할 예정이다.

※ 초광역권 계획도 지역 주도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20년 단위)과 연계

-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초광역협력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신속 지원**한다.

* (현행) 총사업비 500억, 국비 300억 → (검토) 총사업비 1,000억, 국비 500억

** 500억 미만 사업 대상 투자심사 면제 검토 및 수시심사 적극 활용

- 예산 편성 시,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관리하며, 국고보조율을 상향(50% →60%)한다.
- 또한, 초광역협력지표를 개발하여 **초광역사업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할 계획이다.

- 초광역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가칭)**'를 **신설***하여 범부처 이행과제 점검 및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초광역협력 전담조직도 보강**한다.

* 기존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확대 개편

-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한다.

-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특별지자체***를 구성하여 견고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

-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하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구성
-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소요재원과 시범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출범 준비를 위한 기구 및 인력도 보강**한다.
- 특별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분권협약**'을 통해 적극 위임하며,
- 특별지자체와 통합지자체 대상으로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 **종합적인 사업패키지 및 재정·사업·규제·세제 등 지원특례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광역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분권위, 관계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지방분권법**」 개정 추진도 본격 논의한다.

□ 지역주민들이 초광역협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도 도입한다.

○ 공간적으로는 단일의 경제·생활권 조성 지원을 확대한다.

-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BRT 및 환승센터, 도로를 확대하는 등 중심부와 주변 도시 간 연결성을 대폭 강화하여 네트워크의 핵심인 광역교통망을 조성한다.
- 대중교통 취약지에도 저렴한 택시서비스(100원 택시 등) 및 대체버스 지원 확대 등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 광역교통 중심지에는 범부처 지원이 융합된 도심융합특구,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는 캠퍼스 혁신파크 등을 조성하고, 주거플랫폼·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자족생활권을 구성하여 인재-자본-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지역 거점을 육성한다.

○ 산업 분야에서는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범부처가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 초광역 산업협력 촉진을 위해 초광역 단위의 산업기반 구축과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기존의 산업거점과 혁신거점의 연계도 강화**한다.

* 전략산업에 대한 산학융합지구 지정·확대(R&D, 인력양성프로그램) 등

**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간 초광역 산업 생태계 조성 등

- 아울러, 기업들이 초광역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지방투자촉진법」 제정을 검토하는 등 투자 확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 허브기업군 투자유치를 위한 조달·국고보조·R&D 매칭 등 검토

○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지역대학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초광역형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인재의 정착을 유도한다.

- 구체적으로는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 유형으로 제도화하여 학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 교육 분야 최초로 고등교육 규제특구인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도입하고, 기존의 지역혁신플랫폼은 초광역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지원한다.
- 또한,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범부처 초광역 인재양성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업과제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정부는 '21년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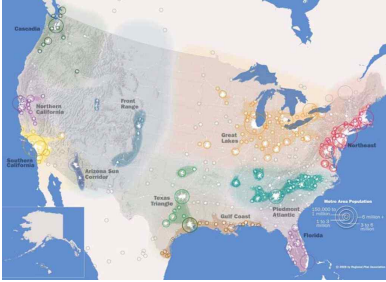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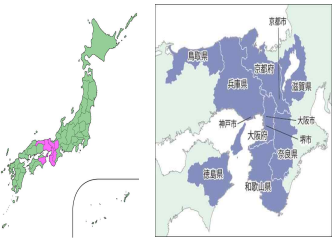
-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별 첨】 브리핑 발표문

【별 첨】(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안)

참고 1

초광역협력 해외사례

구 분	주요 내용
[미국] 초광역 경제권 (Mega-region) 	• (주요내용) 지리·경제적으로 연계된 대규모 초광역권(Mega-region)을 10개로 구성하고 지역 특성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공유, 협력 인프라 구축 * (서부) 농업 및 첨단기술 (남부) 에너지 산업 물류 금융 (동부) 금융 교육 제조업 등 • (특징)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과 재정 지원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 추진 - 우선순위가 높은 지자체 간 협력사업(광역교통망, 교통혼잡, 환경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 - 중앙정부 지원금 및 지방정부 출연금을 활용해 안정적 자원 보장
[영국] 도시권 중심의 광역화 (city-region) 	• (주요내용) 광역단위 대신 맨체스터, 리즈, 리버풀 등 주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8개 도시권(City-Region)을 형성하여 분권 추진 • (특징) 권역 내 지방정부들이 연합지자체(Combined Authorities)를 구성, 중앙정부와 분권 협상을 통해 수행사무 결정 - 지자체 간의 '다지역 협약(MAA: Multi Area Agreement)'을 체결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우선순위 결정, 주택·교통·도시재생·교육훈련 등 정책 공동추진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특별지방공공단체) 	• (주요내용) 2부(府), 6현(縣) 및 4시(市)가 연합하여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12개 자치단체의 총인구는 약 2,067만 명('21년) ※ 일본 최초의 광역연합체로 '10년 12월 설치 • (특징) 자치단체 간 상호 협의한 규약에 따라 7개 분야의 사무(방재, 산업 진흥, 의료, 자격시험·면허 등)를 공동처리 * 주요 사무는 응급 의료용 헬리콥터 운영('21년 세출예산의 약 64%) - 주요세입은 지방정부 부담금 국고보조금 사용료수수료 수입 등
[프랑스] 리옹 메트로폴 (특별지위 자치단체) 	• (주요내용) 중부지역의 59개 코뮌(기초정부)으로 구성된 특례적 지위를 지닌 지방정부로, 총인구는 약 140만 명('20년) ※ 프랑스에서 가장 큰 3개 메트로폴 중 하나로 '15년 1월 설치 • (특징) 주민 생활 관리(먹는 물과 오수처리 등), 삶의 질 향상(도시 계획, 대중교통 확충 등), 지역경제(창업·고용 창출 등) 등 사무 수행 - 주요 세입은 기업지역경제세, 취득등록세·에너지세, 거주세·토지세·쓰레기처리세, 국가교부금 등

참고 2

초광역협력의 다양한 유형

① 초광역협력 기능별 유형

* 실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는 여러 유형이 복합

구분	초광역적 행정수요 대응	일일 생활권 구축	산업·인재양성 생태계 조성
개요			
목표	■ 기능 연계, 인문적 자원 공유 ⇒ 지역 경제·행정 편익 증진 ⇒ 주민의 삶 개선	■ 지역 간 거리이동시간 단축 ⇒ 공동의 초광역 경제권 및 일일 생활권 형성	■ 특화산업 자원·역량 연계 ⇒ 모듈형 네트워크 협력구축 ⇒ 지역 산업 신성장 동력 확충
사례	■ 생태환경 개선, 에너지 수급 ■ 보건·복지·재난 공동 대응 ■ 문화·관광 진흥	■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연계 ■ 물류체계 개선 ■ 도심융합특구 등 거점조성	■ 신산업벨트 조성 ■ 초광역 공유대학 모델 운영 ■ 가치사슬 연계구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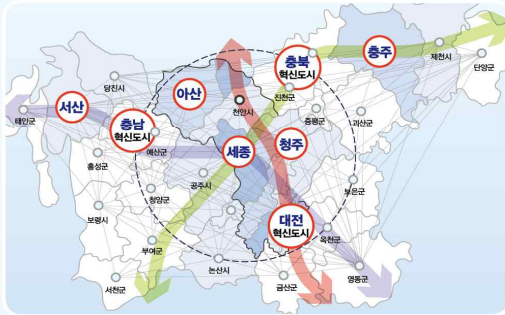
② 초광역협력 공간별 유형

구분	대도시권 형성	중소도시권·강소권	초광역 선형 벨트
개요			
목표	■ 공동 경제·생활권을 형성하는 인접지역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권 형성	■ 지역 간 공동 이슈 대응 및 자원 활용 ⇒ 지역 역량 강화 및 효율적 공동사업 추진	■ 이격 지역 간 초광역 벨트 구축 ⇒ 공동 자원 활용 및 이슈 대응
사례	■ 메가시티 조성 ⇒ 산업, 교통, 생활인프라 등 공동계획 수립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기본계획 구상 등	■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 통합적 관광개발 미래상 수립, 교통 등 인프라 정비	■ 초연결 AI 헬스케어 ⇒ 광주 : 데이터거점 ⇒ 부산 : 실증거점 ⇒ 경기도 : R&D 거점

권역별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대전·세종·충북·충남

“글로벌 신성장 엔진의 중심,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전략 4차산업혁명 특별권역 미래산업 메카, 국가 기능 특화·연계 균형발전 허브

기대 효과 2040년 인구 600만 명, 전 지역 50분 생활권, 국내의 기업 유치 2,000개, 신규일자리 24만개, 온실가스 2억16백만톤 CO2eq 감축(5년간)

향후 계획 특별지자체 설치 운영('24년 내) 후, 충청권 행정통합 추진(중장기)

대구·경북

“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대구경북”



추진 전략 (산업혁신)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사다리 (인재혁신) 미래형 혁신인재 1만명 플랫폼 (공간혁신) 공항·항만 연계 환태평양 글로벌 허브

기대 효과 2040년 인구 550만 명, 실질 GRDP 300조, 벤처·중소기업 5,000개, 외국인 관광객 800만 명

향후 계획 특별지자체 설치 운영('22년 하반기) 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중장기)

광주·전남

“동북아 신성장의 시작, 광주전남 메가시티”



추진 전략 (광역+광역)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현 (광역+기초) 광주-인접 5개 시군 상생발전 전략 수립 (권역+권역) 남해안남부권 연계 신성장축 도약

기대 효과 2040년 인구 500만 명, 실질 GRDP 200조, 기업유치 2,000개 사, 일자리/인력양성 20만 명

향후 계획 '24년 내 특별지자체 설치 후 권역·권역 간, 광역·기초 간 협력 지속 추진

부산·울산·경남

“부울경, 동북아 8대 메가시티”



추진 전략 기후 위기 대응 선도, 혁신 기반 동반 성장, 공간 압축 초광역 인프라

기대 효과 2040년 인구 1,000만 명, 전 지역 1시간 생활권, 실질 GRDP 491조,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향후 계획 '22년 1사분기 내 특별지자체 설치

참고 4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개요

① 개념 * 지방자치법 제12장 신설('21.1.12 공포, '22.1.13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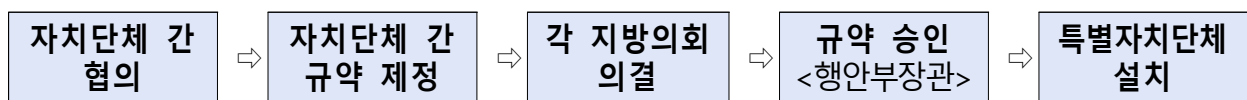
- 2개 이상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法人)
- 규약으로 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비해 자치권 보장이 향상된 제도

【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간 차이점 】

구 분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적성격	공법인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법인
구성기관	-	공동 설치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선임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 ※ 구성 자치단체의 장 겸직 가능
임용권	조합장 임용권 無	특별지방자치단체장 임용권 有
직원 구성	지방자치단체 파견직원	지방자치단체 파견직원 +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지방의회	-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 구성 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
사무위임	-	국가 또는 시·도 사무 위임 가능

② 설치 절차 및 운영

< 설치 절차 >



- (협의) 광역+광역, 광역+기초, 기초+기초 등 2개 이상 자치단체 간 설치 협의
- (규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자치단체 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명칭·수행사무 등을 규정(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 요청 가능)

< 운영 >

- (재정) 구성 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 수혜 범위 등을 고려하여 구성 자치단체의 분담금으로 운영 재원 마련(특별회계 설치·운영)
- 국가 또는 시·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 가능
- (가입·탈퇴) 구성 자치단체의 자발적 의사로 가입·탈퇴 가능